

법인 계좌 개설

1. 상무부 (Ministry of Commerce) 법인 등록증 (Certificate of Incorporation)

2. 정관 ('Memorandum of association' or 'Articles of association')

8 종류 법인 중에 개인사업자 (Sole Proprietorship)을 제외한 모든 법인

3. 이사회 의결서 (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)

-상기 정관의 정족수, 의결권에 의한 이사회의 계좌 개설, 위임자 등을 의결하는 서류 (은행 양식 사용 가능)

-인터넷 뱅킹 (smartBiz), 수표 (Check issue, receive), 페이롤 (Payroll service application) 등

일괄 위임 (related all bank services and products) 추천

-서명된 주주들의 여권 사본 (사본에 서명, 비자 불필요), 위임자는 여권 (유효한 비자) 지참하여 직접 방문

4. 세무 등록증 혹은 당해년도 Patent 혹은 Patent 납부 영수증

-현재 세무 등록시에는 법인 계좌를 요구하는 관행으로, 추후 제출 가능

5. 사업 라이선스 (잔여 유효기간 30 일 이상)

관련 부처의 사업 라이선스는 발급 장시간 소요로, 추후 제출 가능

6. 직인

7. 최초 예치금 (계좌 개설일, KHR 계좌의 경우 상당 KHR 금액)

-당좌 계좌 (Current account, 수표 발행 가능): 500\$

-일반 계좌 (Savings account): 1,000\$

8. 유지 금액 (계좌 개설 다음날부터, KHR 계좌의 경우 상당 KHR 금액)

-당좌 계좌: 100\$

-일반 계좌: 100\$

-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(원본 확인, 복사 후 돌려드립니다)
- 캄보디아 아이디 카드 혹은 여권은 유효기간 잔여 30 일 이상
- 인터넷뱅킹 (smartBiz) 신청시에는 캄보디아 전화번호 필요
- 세무 등록용 혹은 기타 목적 Confirmation Letter (잔액 확인서) 발급 가능 (5\$)

2024 년 5 월 16 일

본자료는 국문 참고용이며, 크메르, 영문 규정에 우선하지 않습니다

본 내용은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